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은행사용란 메모 : 심사역은 회원이 제출한 “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및 구매카드 업무약관(간인필요)” 의 사본이 회원앞 교부되었음을 확인토록 합니다.	담당자	책임자	심사역

1. 회원 정보

회사명	대표자명		
한 글	한 글		
영 문	영 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주소 □ □ □ □ □			
E-mail 주소			
전화번호 () -	담당자명	전 화 () -	
팩스번호 () -		휴대폰 () -	

2. 구매카드의 이용

운 용 방 식	() 할인잔액기준 () 미결제잔액기준		
최대할인 (미결제) 한도	(한글로 기재) _____ 원 * 할인잔액기준 방식하에서는 최대할인잔액을, 미결제잔액기준 방식하에서는 최대매입잔액을 기재함. * 운용방식의 구체적 차이는 구매카드 업무약관 참조.		
결 제 계 좌 번 호	(한국씨티은행) _____ (예금주 : _____)		
매 입 최 장 기 일	회원이 카드사용내역을 은행에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_____ 일 이내		
연 체 수 수 료 율	연 _____ %		
선 지 급 수 수 료	구분	계산식	비고
	적용금리	$= \text{대금청구금액} * \text{적용금리} * \text{신용공여기간} \div 365$	- 신용공여기간 = 결제일-대금지급일 - 원미만 버림 -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직전 영업일 기준 91 일물 CD 유통수익율 이용

		만기(중도) 지급식 가맹점	__ 개월이하 : 91 일물 CD 유통수익율 + 연 _____% __ 개월초과 : 91 일물 CD 유통수익율 + 연 _____%							
취 급 수 수 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계 산 식</th> <th>부담 주체</th> </tr> </thead> <tbody> <tr> <td>취급수수료</td> <td>거래건별 _____ 원</td> <td>() 회원 () 가맹점</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취급수수료	거래건별 _____ 원	() 회원 () 가맹점	
	구 분	계 산 식	부담 주체							
취급수수료	거래건별 _____ 원	() 회원 () 가맹점								
*만기(중도)지급식 가맹점하에서 미할인잔액에 대해 징구함.										

당사는 구매카드 업무약관,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수령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행과 상기 “ 2.구매카드의 이용” 내 (결제계좌번호) 항목에서 명시한 결제계좌 관련하여 수신거래 기본약관 및 예금종류별 약관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귀행이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당사의 예금청구서, 통장 등의 제시없이 출금하여 구매카드 사용대금의 결제에 충당할 수 있음을 승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회사명 (명판)
 대표자

법인인감(인)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이사회결의서
5. 정관
6. 기타 필요한 서류

인감대조:

구매카드 업무약관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구매기업 : “ 구매기업 ” 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한국씨티은행 (이하 “ 은행 ” 이라 한다)에 구매카드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승락받은 사업자를 의미한다.
2. 카드 : “ 구매기업 ” 의 상품구매 및 구매대금결제를 위하여 “ 은행 ” 이 발급한 구매대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말한다.
3. 판매기업 : “ 구매기업 ” 의 거래처로 “ 은행 ” 과 구매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4. 미결제잔액기준 방식 : “ 구매기업 ” 이 “ 은행 ” 앞 제출한 카드사용대금 미결제잔액의 누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할인잔액기준 방식 : “ 구매기업 ” 이 “ 은행 ” 앞 제출한 카드사용대금 명세에 대해 “ 은행 ” 이 “ 판매기업 ” 앞 선지급한 누계를 기준으로 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 2 조 (회원 가입)

1. “ 구매기업 ” 은 “ 은행 ” 이 정한 구매카드 업무약관 및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에 의해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2. 본 구매카드 업무약관에서 정한 사항은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카드의 이용)

1. “ 구매기업 ” 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상품 및 용역 등에 대한 구매대금결제에 한정하여 카드를 이용하며, 은행의 카드실물발급은 생략한다.
2. “ 구매기업 ” 은 “ 은행 ” 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구매대금 결제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은행은 “ 구매기업 ” 의 신청내역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은행이 구매대금 결제정보를 수락하는 경우 해당 결제대금은 본 약관에서 정한 업무처리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제 4 조 (연회비)

카드의 연회비는 면제한다.

제 5 조 (대금의 결제)

1. 카드사용대금의 결제일은 “ 구매기업 ” 이 “ 은행 ” 에게 카드사용대금을 상환하기로 통보한 날로 한다.
2. “ 구매기업 ” 은 구매카드 운용방식인 할인잔액기준 방식 및 미결제잔액기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할인잔액기준 방식하에서 “ 구매기업 ” 은 “ 은행 ” 과 약정한 결제일에 지정결제계좌에 오후 2 시 이전에 입금함으로써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한다. 미결제잔액기준 방식하에서 “ 구매기업 ” 은 “ 은행 ” 과 약정한 결제일에 지정결제계좌에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전에 입금함으로써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한다.
3. “ 구매기업 ” 의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전에 “ 은행 ” 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및 미결제잔액기준 방식하에서 결제일 당일 오전중 “ 은행 ” 이 판매기업앞 지급한 대금에 대해, “ 구매기업 ” 은 해당 카드사용대금 명세에 대한 결제의무가 있으며 결제일에 이의없이 대금을 결제한다.
4. “ 구매기업 ” 은, 판매기업이 카드사용대금 명세의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금수취 권리를 “ 은행 ” 앞 양도하며 선지급 권리를 부여받음을 인정한다.
5. “ 구매기업 ” 이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 또는 전체를 결제하지 않아 연체되는 경우 “ 은행 ” 은 “ 구매기업 ” 의 카드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판매기업의 결제일전 대금 선지급 요청을 거절하고, 연체 이후 결제일에 이르게 되는 미지급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6. “ 구매기업 ” 은 연체발생시 소정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한다. “ 은행 ” 은 수수료 기준에 따라 “ 구매기업 ” 과 사전 협의하여 연체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주) 한국씨티은행

7. “은행”은 “구매기업”의 결제대금 중 판매기업 앞 선지급된 대금을 우선 상환한 후 판매기업에 만기대금지급건을 지급한다.
8. 할인잔액기준방식하에서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지정결제계좌로부터 인출 가능한 결제대금이 결제대상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판매기업앞 선지급된 대금만을 회수하며, 판매기업앞 결제일 만기대금지급건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한 카드사용건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단, 결제일 전 판매기업에 선지급된 대금 중 상환되지 않은 대금이 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연체로 관리하고, 판매기업에 대한 만기대금지급건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9. 미결제잔액기준방식하에서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지정결제계좌로부터 결제대금 전액을 출금하고, 결제대금이 결제대상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 차액은 연체로써 관리된다.

제 6 조 (가맹점 계약)

1. 판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다.
2. “구매기업”은 각 판매기업에 결제할 카드사용대금의 명세를 전자적 방식 또는 서면 등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게 제공한다.
3. 판매기업은 “은행”과 가맹점계약 체결시 즉시(할인)지급식과 만기(중도)지급식 운용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시(할인)지급식”이란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내역을 접수한 익영업일에, 판매기업의 별도 선지급요청없이 선지급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기업의 지정결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만기(중도)지급식”이란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지급내역을 접수한 후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기업별 카드사용대금 명세에 따라 전 3 항에 의해 판매기업이 선택한 대금지급 방법으로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한다.
5. 판매기업은 만기(중도)지급식 운용방식하에서도 전자적방식 또는 서면 등 “은행”이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은행”앞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판매기업이 서면에 의해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기업은 “은행”의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하기로 한다.
6. 판매기업이 가맹점계약 체결시 선택한 대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 또는 “은행”앞 서면요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7. 만기(중도)지급식 운용방식하에서, 판매기업의 결제일 전 선지급 요청은 “구매기업”이 정한 결제일로부터 2 영업일 전까지 전 5 항의 방식에 의해 “은행”에 요청되어야 한다. “은행”은 “구매기업”의 카드사용대금 명세 중 결제일로부터 2 영업일 전까지 선지급 요청이 없는 카드사용대금을 “구매기업”의 결제일에 소정의 취급수수료 차감 후 판매기업의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8. 전 2 항의 카드사용대금 명세는 판매기업 앞 선지급 전에 한하여 “구매기업”의 요청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취소 요청 전에 “은행”이 판매기업앞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9. 판매기업은 결제일전 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소정의 선지급수수료를 부담한다.
10. “구매기업”이 등록하는 카드사용대금 명세는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은행”은 동 내역 등록시 발생가능한 오류 또는 사기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근거로 판매기업앞 선지급 혹은 만기시 대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거래정보교환)

1. 본 약관과 관련한 카드사용대금 명세의 전송, 대금지급 요청 등의 처리는 전자적방식(기업인터넷뱅킹 등) 또는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업인터넷뱅킹이외에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에 따른 비용은 “구매기업” 및 “은행” 간 협의에 따르기로 한다.
3. “구매기업”은 제 6 조 제 2 항의 카드사용대금 명세의 제공 이외에, “은행”이 필요로 하는 판매기업에 대한 정보를 “은행”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4. “구매기업” 및 “은행”은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서로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 8 조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의 수취)

“구매기업”은 “은행”을 대신하여 구매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및 가맹점 정보변경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구매기업”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판매기업 본인이 신청함을 확인하여 “은행”에게 제출한다.

제 9 조 (의무이행능력)

“구매기업”은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기에 이르게 될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고, 그 영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공정가액 모두 부채가액 (이자가 부리되는 채무를 의미하며, 순자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상회함을 확인한다.

제 10 조 (중대하고 불리한 변화의 미존재)

“구매기업”은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구매기업” 재무제표가 그 시기에 종료된 “구매기업”의 회계년도에 대한 재정상태와 영업결과를 공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일치하고, 그 날 이후 재정상태나 영업에 관하여 중대하고 불리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제 11 조 (소송 관련 확인)

1. “구매기업”은 구매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구매기업”의 경영, 재산 및 재무상황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행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이 “구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제기될 우려가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구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 재산 및 재무상황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행정사건 또는 중재사건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12 조 (확인사항의 재확인)

“구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다른 여신을 추가로 받는 경우, 그 추가 여신 약정을 하는 시점에 이 약관상의 모든 확인사항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이 약관상의 확인사항에 언급된 “구매기업”의 재무제표는 이를 재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구매기업”의 재무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 조 (책임범위)

1. “은행”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은행”의 과실 또는 고의적 부당행위로 인하여 “구매기업”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의 의무를 다한다.
2. “구매기업”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직원이 행한 사기 행위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진다.
3. “은행”은 폭동, 화재, 홍수, 파업, 법규상의 제한, 천재지변 등 “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기계 고장 또는 파괴 행위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손실, 이익의 상실 및 기타 특별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4. “은행”은 본 약관과 관련된 다른 “은행”의 과실 및 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구매기업”과 “은행”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을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구매기업”은 동 약정하에서의 카드사용대금 결제 의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계약의무 미이행, 이행불능, 무효, 상계 등에 영향받지 않음을 인지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

“구매기업” 또는 “은행” 어느 일방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그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15 조 (적용기간)

1. 이 계약의 적용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구매기업” 이나 “은행” 은 30 일 이전에 서면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구매기업” 은 계약해지 후 30 일 이내에 “은행” 에게 미결제 카드사용대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밀유지)

“구매기업” 과 “은행” 은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있는 자는 손해배상 및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7 조 (계약의 변경)

1. 구매카드 업무약관이 변경될 경우, “은행” 은 적용 만 1개월 이전에 “구매기업” 앞 동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2. “구매기업” 과 “은행” 간 본 약관과 다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3. 상기 1항 및 2항의 경우, “구매기업” 은 판매기업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기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매기업” 과 판매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변경된 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매기업” 이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은행” 은 면책시키기로 한다.

제 18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상의 해석에 이견이 생긴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제 19 조 (일반약관 및 준거법)

이 약관은 “은행” 의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대한민국 해당 법령에 의거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20조 (관할의 합의)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상호 노력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